1부 이론시험 : 기업회계(10문항), 세무회계(10문항)

객관식	문항당 2점

[A형]

기업회계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④	②	①	③	④	②	①

세무회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①	④	③	①	②	②

[B형]

기업회계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②	①	①	②	④	④	②

세무회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②	②	④	③	②	③	①

1.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채발행 시점에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 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할인발행에 따른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회계처리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보다 사채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더 높으면 상환손실이 발생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답] ① ㉠
㉠ : 옳음,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 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 : 틀림,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에 따른 사채발행차금의 상각 또는 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 : 틀림,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회계처리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 : 틀림,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보다 사채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더 높으면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2. 회사의 순자산은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인하여 변동된다. 다음의 계정 중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계정이 아닌 것은?

① 감자차익 ② 매출채권처분손실 ③ 자기주식처분이익 ④ 주식발행초과금

[답] ②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3. 다음 재무상태표상의 계정 중 관련 계정에서 차감하는 성격의 계정이 아닌 것은?

① 대손충당금 ② 감가상각누계액 ③ 자산취득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 ④ 사채할증발행차금

[답] ④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은 차감하는 성격의 계정이고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 계정에 부가되는 성격의 계정이다.

4.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 투자자산 ② 무형자산 ③ 유형자산 ④ 재고자산

[답] ④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자본 : ?	・기말자산 : 356,000원	・기말부채 : 204,000원
・기중 자본금 증가액 : 80,000원	・당기순이익 : 62,000원	・배당금 지급액 : 5,000원

① 10,000원 ② 15,000원 ③ 18,000원 ④ 21,000원

[답] ② 15,000원

・기말자본 : 356,000원 - 204,000원 = 152,000원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증자 80,000원 + 당기순이익 62,000원 - 배당금 지급 5,000원

= 기말자본 152,000원

∴ 기초자본 = 15,000원

6. 다음은 ㈜회계의 2024년 재무자료의 일부이다. ㈜회계의 2024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총이익 : 8,000,000원	・법인세비용 : 900,000원
・감가상각비 : 1,50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 3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 1,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 500,000원
・임직원 급여 : 2,000,000원	・임차료 : 200,000원

① 2,600,000원 ② 3,000,000원 ③ 3,400,000원 ④ 4,000,000원

[답] ① 2,6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당기순이익 산출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 매출총이익 8,000,000원 - 임직원 급여 2,000,000원 - 감가상각비 1,500,000원 - 임차료 200,000원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원 -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0원 - 법인세비용 900,000원

∴ 당기순이익 = 2,600,000원

7. 2024년 12월 31일 ㈜서초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유한 상품 중 4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초의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화재로 소실된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재고액 : 1,000,000원

・당기 매입액 : 5,000,000원(12월 31일 현재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당기 매출액 : 8,000,000원

・매출총이익률 : 30%

① 80,000원 ② 100,000원 ③ 120,000원 ④ 200,000원

[답] ③ 120,000원

・24년 판매가능재고액 : 1,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24년 매출원가 : 8,000,000원×(1 - 매출총이익률) = 5,600,000원

・기말재고액 : 6,000,000원 - 5,600,000원 = 400,000원

・화재로 인한 재고 소실 추정액 : (400,000원 - 100,000원)×40% = 120,000원

8. 제조업을 영위하는 ㈜명달은 2024년 4월 1일에 특수목적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달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원)을 적용한다. ㈜명달의 2024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 기계장치 구입가격 : 2,900,000원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 100,000원
-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 200,000원

① 420,000원 ② 435,000원 ③ 450,000원 ④ 465,000원

[답] ④ 465,000원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운송비, 설치비, 조립비, 시운전비)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 2,9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3,200,000원
- 2024년 감가상각비 : (3,200,000원 - 100,000원)/5×9/12 = 465,000원

9. ㈜경진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500,000원이며 매출총이익은 150,000원일 경우 202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구분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0원	24,000원
재공품	200,000원	180,000원
제품	100,000원	90,000원

① 280,000원 ② 320,000원 ③ 340,000원 ④ 380,000원

[답] ② 320,000원

- 2024년 매출원가 : 500,000원(매출액) - 150,000원(매출총이익) = 350,000원
- 매출원가 : 기초제품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제조원가
  = 100,000원 + 당기제품제조원가 - 90,000원
  = 350,000원

∴ 당기제품제조원가 = 350,000원 - 100,000원 + 90,000원 = 340,000원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200,000원 - 180,000원 = 340,000원

∴ 당기총제조원가 = 340,000원 - 200,000원 + 180,000원 = 320,000원

10. ㈜대회는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말 제조간접원가 과소 또는 과대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조간접원가예산 : 180,000원
・예상 직접노무시간 : 15,000시간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 160,000원
・실제 직접노무시간 : 13,000시간

① 4,000원 과소배부 ② 8,000원 과대배부 ③ 12,000원 과소배부 ④ 15,000원 과대배부

[답] ① 4,000원 과소배부

・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예산/예상 직접노무시간
= 180,000원/15,000시간 = 12원/시간

・160,000원 - 13,000시간×12원/시간 = 4,000원(과소배부)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기부금 지출액을 가지급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②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내국법인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인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④ 은행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발생주의에 따라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하므로 이연 처리한 기부금은 당기의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유보)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 사항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중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인 직원이 사외유출 된 소득의 귀속자인 경우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비용
③ 사외유출 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 금액)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액 계산 시 기본한도액은 중소기업, 일반기업,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법인 등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
②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별 한도액은 모든 수입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현물기업업무추진비는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답] ②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별 한도액은 일반수입금액과 특수관계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특수관계수입금액은 일반수입금액 적용율의 10%를 적용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14. 다음은 ㈜세무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세무의 제5기 사업연도(2024.01.01.~2024.12.31.) 기계장치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취득일 : 2022.07.01.
- 취득가액 : 20,000,000원
-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현황
  - 2022년 : 5,000,000원
  - 2023년 : 0원
  - 2024년 : 5,000,000원
-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으로, 상각률은 0.2를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세무는 중소기업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아니며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① 1,400,000원 ② 2,000,000원 ③ 2,120,000원 ④ 2,880,000원

[답] ③ 2,120,000원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감가상각의 의제),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는 미상각잔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당기감가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각 사업연도별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 합계액)×0.2

・2022년 감가상각범위액 : 20,000,000원×0.2×6/12 = 2,000,000원

・2023년 감가상각범위액 : (20,000,000원 - 2,000,000원)×0.2 = 3,600,000원

・2024년 감가상각범위액 : (20,000,000원 - 2,000,000원 - 3,600,000원)×0.2 = 2,880,000원

・상각부인액 : 5,000,000원 - 2,880,000원 = 2,120,000원

15.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 홍길동씨가 거주자 김홍도씨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김홍도씨의 금융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가산되어야 할 귀속법인세(Gross-up)는 얼마인가?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이자 : 10,000,000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5,000,000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10,000,000원

① 500,000원 ② 550,000원 ③ 1,000,000원 ④ 1,100,000원

[답] ① 500,000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및 제56조 제4항

・귀속법인세액 = Min[Gross-up 대상 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 2천만원]×10%

= Min[10,000,000원, (25,000,000원 - 20,000,000원)]×10%

= 5,000,000원×10%

= 500,000원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답] ④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

17. 다음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거주자 A씨의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치하며 기장한 복식장부에 의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A씨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1)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기타소득금액 : 1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액 : 5,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 1,000,000원
(4)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6%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15% - 1,260,000원

① 1,990,000원 ② 2,192,000원 ③ 2,391,500원 ④ 2,990,000원

[답] ③ 2,391,5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 40,000,000원 - 5,000,000원 = 35,0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 : 35,000,000원×15% - 1,260,000원 = 3,990,000원

・기장세액공제 : Min(1,000,000원, 3,990,000원×30,000,000원/40,000,000원×20%) = 598,500원

・결정세액 : 3,990,000원 - 598,500원 = 3,391,500원

・자진납부할세액(추가납부할 세액) : 3,392,000원 - 1,000,000원 = 2,391,500원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거래처의 기계장치와 당사의 재고자산을 교환하는 계약에 따라 재고자산을 인도하는 것

② 대여한 재화가 분실되어 받는 변상금

③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④ 음식점 사업자가 음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답]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교환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② 부기통 4-0-1 제1항 제4호, 대여한 재화에 대한 분실변상금은 재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② 음식·숙박용역 등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봉사료
③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④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준 사업자가 대가의 전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음식·숙박용역 등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공제한도는 10,000,000원이다.
③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지 못한다.
④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은 1.2%이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3호, 시행령 제88조 제3항,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나,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을 수 있다. 2026.12.31까지 공제율은 1.3%를 적용한다.

2부 실무시험 : 전산세무회계(5문항)

㈜다운산업(회사코드 : 2010)은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제11기) 회계기간은 2024.1.1. ~ 2024.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 본 전 제 >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문제의 풀이와 답안작성은 제시된 문제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문제1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9점)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거래 및 채권·채무 관련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전자 여부를 입력하여 반영한다.

[1] 04월 30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당사 제품을 시청에 기부하였다. 제조원가(장부가)는 5,000,000원이고 시가는 6,000,000원이다. (2점)

[답] 일반전표입력

2024.04.30.	(차)	기부금	5,000,000원	(대) 제품	5,000,000원
				(적요8. 타계정으로 대체)	

[2] 05월 06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당기의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연금 2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체한 금액 중에서 11,000,000원은 제조부서 직원분이고 나머지는 영업부서 직원분에 해당한다. (2점)

[답] 일반전표입력

2024.05.06.	(차)	퇴직급여(제)	11,000,000원	(대) 보통예금	20,000,000원
		퇴직급여(판)	9,000,000원		

[3] 06월 06일 금일 ㈜수아무역에 제품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수아무역은 2024년 7월 15일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당사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로 추가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처리는 2개가 되어야 하고 서류번호는 생략함) (3점)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40606-16532792-65421539		
공급자	등록번호	235-86-91265	종사업장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871-81-05842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다운산업	성명	정다운		상호(법인명)	㈜수아무역	성명	조수아
	사업장주소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1길 3				사업장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35		
	업태	제조,도소매	종목	전자부품		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기기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4.06.06.	21,000,000	2,100,000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6	06	전자부품				21,000,000	2,1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23,100,000				23,100,000	위 금액을 **(청구)** 함

[답]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1.과세, 공급가액: - 21,000,000 원, 부가세: - 2,100,000 원, 공급처명:㈜수아무역, 전자:여, 분개:외상,혼합

2024.06.06. (차) 외상매출금 - 23,100,000원 (대) 제품매출 - 21,000,000원
(㈜수아무역) 부가세예수금 - 2,100,000원

유형:12.영세, 공급가액:21,000,000원, 부가세:0 원, 공급처명:㈜수아무역, 전자:여, 분개:외상 또는 혼합
영세율구분:③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2024.06.06. (차) 외상매출금 21,000,000원 (대) 제품매출 21,000,000원
(㈜수아무역)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다.

[4] 06월 1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승용차(2,500cc, 5인승)를 장기렌트하기로 하고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당사는 렌트비용에 대하여 임차료 계정을 사용하며, 상대 계정으로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한다 (2점)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40611 - 15454645 - 58811886		
공급자	등록번호	148-87-15989	종사업장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235-86-91265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현대캐피탈	성명	김지석		상호(법인명)	㈜다운산업	성명	정다운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3				사업장주소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1길 3		
	업태	임대	종목	렌트카		업태	제조,도소매	종목	전자부품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4.06.11	1,000,000	100,000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6	11	케이 888				1,000,000	1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1,100,000				1,100,000	위 금액을 **(청구)** 함

[답]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54.불공,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0,000원, 공급처명:현대캐피탈 전자:여, 분개:혼합
불공제사유:③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2024.06.11. (차) 임차료(판) 1,100,000원 (대) 미지급비용 1,100,000원

문제2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시오. (10점)**

[1]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2024.4.25.)까지 신고하지 못하여 2024년 5월 1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과세표준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할 것) (6점)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과세 매출액 :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과세 매출액 :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

・해외 직수출분 매출액 : 공급가액 150,000,000원, 세액 0원

<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내역

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일반 매입	150,000,000원	15,000,000원	고정자산 아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1,000,000원	100,000원	고정자산 아님
기계장치 매입	100,000,000원	10,000,000원	고정자산임
합계	251,000,000원	25,100,000원	

・현금영수증 매입분 내역

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일반 매입	5,000,000원	500,000원	고정자산 아님
접대를 위한 매입	3,000,000원	300,000원	고정자산 아님
합계	8,000,000원	800,000원	

※ 기타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산세 적용 시 일반무신고(부당 아님)를 적용하되, 미납일수는 6일을 가정한다.

・영세율첨부서류는 기한후신고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답]

1. [부가가치세신고서(기한후신고서)]

(1)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

신고구분 :	4	(1.예정 2.확정 3.영세율 조기환급 4.기한후과세표준)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폐업일자 :	____-__-__	폐업사유 :			

(2) 부가가치세신고서

일반과세 | 간이과세

조회기간 2024 년 1 월 1 일 ~ 2024 년 3 월 31 일 신고구분 1.정기신고 신고차수 부가율 67.63 예정

구분				정기신고금액 금액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발급분	1	300,000,000	10/100	30,00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	3	32,000,000	10/100	3,200,0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영세	세금계산서발급분	5		0/100	
		기타	6	150,000,000	0/100	
	예정신고누락분		7			
	대손세액가감		8			
	합계		9	482,000,000	㉮	33,200,000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	151,000,000		15,100,000
		수출기업수입분납부유예	10-1			
		고정자산매입	11	100,000,000		10,000,000
	예정신고누락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5,000,000		500,000
	합계(10)-(10-1)+(11)+(12)+(13)+(14)		15	256,000,000		25,6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6	1,000,000		100,000
	차감계 (15-16)		17	255,000,000	㉯	25,5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7,700,000
경감공제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19	35,200,000		
	합계		20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1		㉳	
예정고지세액			22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	
가산세액계			26		㉸	1,155,164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27			8,855,164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구분				금액	세율	세액
7.매출(예정신고누락분)						
예정누락분	과세	세금계산서	33		10/100	
		기타	34		10/100	
	영세	세금계산서	35		0/100	
		기타	36		0/100	
	합계		37			
12.매입(예정신고누락분)						
예정누락분	세금계산서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합계		40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	일반매입				
		고정매입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관광객에대한환급세액					
	합계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표	일반매입		41	5,000,000		500,000
	고정매입		42			
의제매입세액			43		뒤쪽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44		뒤쪽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45			
재고매입세액			46			
변제대손세액			47			
외국인관광객에대한환급세액			48			
합계			49	5,000,000		500,000

25.가산세명세					
사업자미등록등		61		1/100	
세 금 계산서	지연발급 등	62		1/100	
	지연수취	63		5/1,000	
	미발급 등	64		뒤쪽참조	
전자세금 발급명세	지연전송	65		3/1,000	
	미전송	66		5/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67		5/1,000	
	지연제출	68		3/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9	7,700,000	뒤쪽	770,000
	무신고(부당)	70		뒤쪽	
	과소·초과환급(일반)	71		뒤쪽	
	과소·초과환급(부당)	72		뒤쪽	
납부지연		73	7,700,000	뒤쪽	10,164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74	150,000,000	5/1,000	375,000
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		75		1/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76		1/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미제출 · 과다기재		79		5/1,000	
합계		80			1,155,164

구분		금액	세율	세액
16.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50	1,000,000		100,000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51			
대손처분받은세액	52			
합계	53	1,000,000		100,000
18.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54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55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56			
대리납부세액공제	57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8			
기타	59			
합계	60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7,700,000원×20%×(1 - 50%) = 77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 7,700,000원×6일×22/100,000 = 10,164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150,000,000원×0.5%×(1 - 50%) = 375,000원

[2] 다음의 자료는 ㈜다운산업의 면세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4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2024.10.01.~2024.12.31.)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제조업 면세농산물등] 탭을 이용)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반드시 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4점)

(1) 면세 원재료 매입내역

취득일자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물품명	수량	매입가액	구분
2024.10.08.	㈜청푸드	709-96-48536	원재료A	60kg	18,200,000원	법인 신용카드 결제
2024.11.19.	오바다	720512-1486224	원재료B	140kg	33,800,000원	농어민 매입, 계좌이체

(2)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만을 영위하며,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3) 제2기 과세기간의 제품 과세표준은 312,000,000원이고, 면세 원재료 매입액은 위 (1)의 금액이 전부이다.

(4) 제1기 과세기간의 제품 과세표준은 260,000,000원이고, 면세 원재료 매입액은 208,000,000원,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5,000,000원이었다.

(5) 주어진 자료 이외의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한다.

[답]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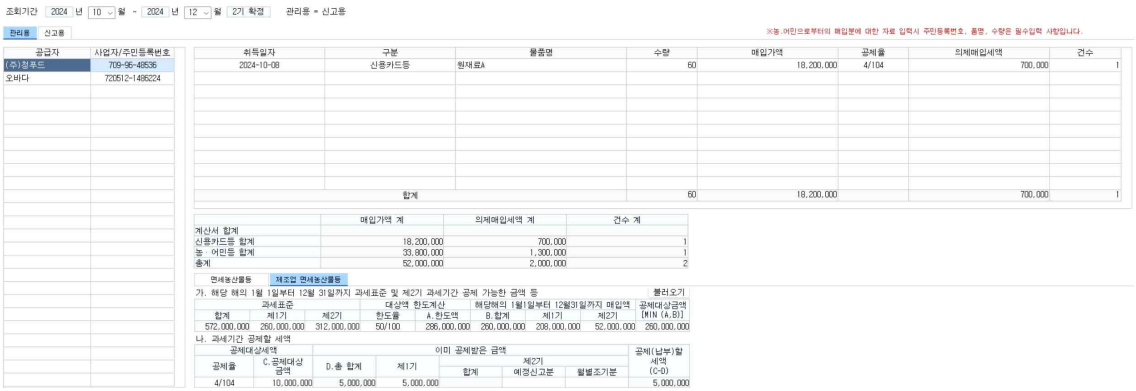

조회기간 2024 년 10 월 ~ 2024 년 12 월 2기 확정 관리용 = 신고용

관리용 신고용

※농.어민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자료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품명, 수량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공급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청푸드	709-96-48536
오바다	720512-1486224

취득일자	구분	물품명	수량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건수
2024-10-08	신용카드등	원재료A	60	18,200,000	4/104	700,000	1
합계			60	18,200,000		700,000	1

	매입가액 계	의제매입세액 계	건수 계
계산서 합계			
신용카드등 합계	18,200,000	700,000	1
농·어민등 합계	33,800,000	1,300,000	1
총계	52,000,000	2,000,000	2

면세농산물등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가.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불러오기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해당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MIN (A,B)]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A.한도액	B.합계	제1기	제2기	
572,000,000	260,000,000	312,000,000	50/100	286,000,000	260,000,000	208,000,000	52,000,000	260,000,000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금액				공제(납부)할 세액 (C-D)
공제율	C.공제대상금액	D.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신고분	월별조기분	
4/104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조회기간 2024 년 10 월 ~ 2024 년 12 월 2기 확정 관리용 = 신고용

관리용 신고용

※농.어민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자료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품명, 수량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공급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청푸드	709-96-48536
오바다	720512-1486224

취득일자	구분	물품명	수량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건수
2024-11-19	농어민매입	원재료B	140	33,800,000	4/104	1,300,000	1
합계			140	33,800,000		1,300,000	1

	매입가액 계	의제매입세액 계	건수 계
계산서 합계			
신용카드등 합계	18,200,000	700,000	1
농·어민등 합계	33,800,000	1,300,000	1
총계	52,000,000	2,000,000	2

면세농산물등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가.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불러오기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해당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MIN (A,B)]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A.한도액	B.합계	제1기	제2기	
572,000,000	260,000,000	312,000,000	50/100	286,000,000	260,000,000	208,000,000	52,000,000	260,000,000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금액				공제(납부)할 세액 (C-D)
공제율	C.공제대상금액	D.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신고분	월별조기분	
4/104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제조업으로서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그 해의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므로 1역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문제3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결산정리분개를 하거나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6점)**

[1] 당사는 전기에 제조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150,000,000원)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시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해당 기계장치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월할 상각한다. 결산일의 분개를 하시오. (단, 기계장치는 당기 4월 10일부터 사용이 개시되었음) (2점)

[답] 일반전표입력

2024.12.31.	(차)	감가상각비(제)	22,500,000원(주1)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2,500,000원
		국고보조금(기계장치)	7,500,000원		감가상각비(제)	7,500,000원(주2)

(주1)150,000,000원÷5×9/12 = 22,500,000원

(주2)50,000,000원÷5×9/12 = 7,500,000원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개시일(4월 10일)부터 시작한다.

[2] 아래의 자료는 결산일 현재 정기적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결산일 분개를 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할 것) (2점)

과목(회사명)	금액	발생일	만기	이자율	지급일
정기적금(한국은행)	480,000,000원	2024.05.03	2025.05.03.	연 5%	매년 5월 3일
장기차입금(기업은행)	50,000,000원	2022.01.31.	2026.01.31.	연 4%	매년 1월 31일

[답] 일반전표입력

2024.12.31.	(차) 미수수익	16,000,000원	(대) 이자수익	16,000,000원
	이자비용	2,000,000원	미지급비용	2,000,000원

・미수수익 : 480,000,000원×5%×8/12 = 16,000,000원

・이자비용 : 50,000,000원×4% = 2,000,000원

[3] 재고자산 실지조사 결과 기말 재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중인 재고자산 원재료 2,500,000원이 결산일 현재 운송 중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아 실지재고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산일 분개를 하시오. (2점)

재고자산	기말재고액
원재료	45,000,000원
재공품	25,500,000원
제품	60,800,000원

[답] [결산자료입력]

> 기간 : 2024년 01월 ~ 2024년 12월

> 2.매출원가 > 1).원재료비 > ⑩기말원재료 재고액 47,500,000원 입력

> 8).당기총제조비용 > ⑩기말재공품 재고액 25,500,000원 입력

> 9).당기완성품제조원가 > ⑩기말제품 재고액 60,800,000원 입력

> F3 전표추가

문제4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다음은 영업부 홍철기(사번 : 102, 입사일 : 2024년 6월 1일) 대리의 2024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명세] 탭을 작성하고, 종전 근무지 자료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소득명세] 탭에 입력하시오. 연말정산 추가자료 중 보험료와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탭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액] 탭에 입력한 후 [연말정산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6점)

1. 부양가족현황

관계	성명	주민번호	소득자료	비고
본인	홍철기	931122-1456899	총급여 2,590만원	・현 직장에서 받은 금액임 ・세대주에 해당함
부	홍웅기	630125-1568942	소득없음	
모	송미영	690210-2583616	금융소득금액 3,200만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함
동생	홍철수	050302-3259488	일용근로소득 720만원	・고등학생에 해당함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위의 가족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제시된 자료 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u>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명세에 입력하며 기본공제 '부'로 작성한다.</u>

2. 종전 근무지 자료는 다음과 같고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기로 한다.

・근무처명 : ㈜블루밍물산(605-85-18656)
・근무기간 : 2024.1.1. ~ 2024.5.31.
・급여 : 17,500,000원
・건강보험료 : 486,800원
・상여 : 1,500,000원
・장기요양보험료 : 52,400원
・국민연금보험료 : 524,000원
・고용보험료 : 49,700원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명세	결정세액	298,700원	29,870원
	기납부세액	204,000원	20,400원
	차감징수세액	94,700원	9,470원

3. 연말정산 관련자료

항목	내용
보험료	· 본인 자동차 보험료 : 713,000원 · 부친 보장성 보험료 : 288,000원 · 모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712,000원
교육비	· 본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820,000원 · 동생 학교 급식비 : 448,000원 · 동생 학교 체험학습비 : 156,000원
의료비	· 부친 보청기 구입비용 : 1,050,000원 · 모친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비용 : 600,000원 · 동생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 300,00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 12,200,000원(㈜다운산업의 비용으로 처리된 200,000원 포함) · 부친 직불카드 사용액 : 1,800,000원(전통시장 사용분 370,000원 포함) · 동생 직불카드 사용액 : 680,000원(동생 명의의 직불카드임)
월세자료	· 임대차 계약 정보 - 임대인 : 나경자(521121-1357822)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싹아파트 가동 202호(79㎡) - 임대차 계약기간 : 2023.11.01. ~ 2025.10.31. · 연간 월세 지급액 : 7,200,000원 · 홍철기 대리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

※ 위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이며,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의료기관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입력하지 않는다.

[답]

1. [사원등록] 메뉴 → [부양가족명세]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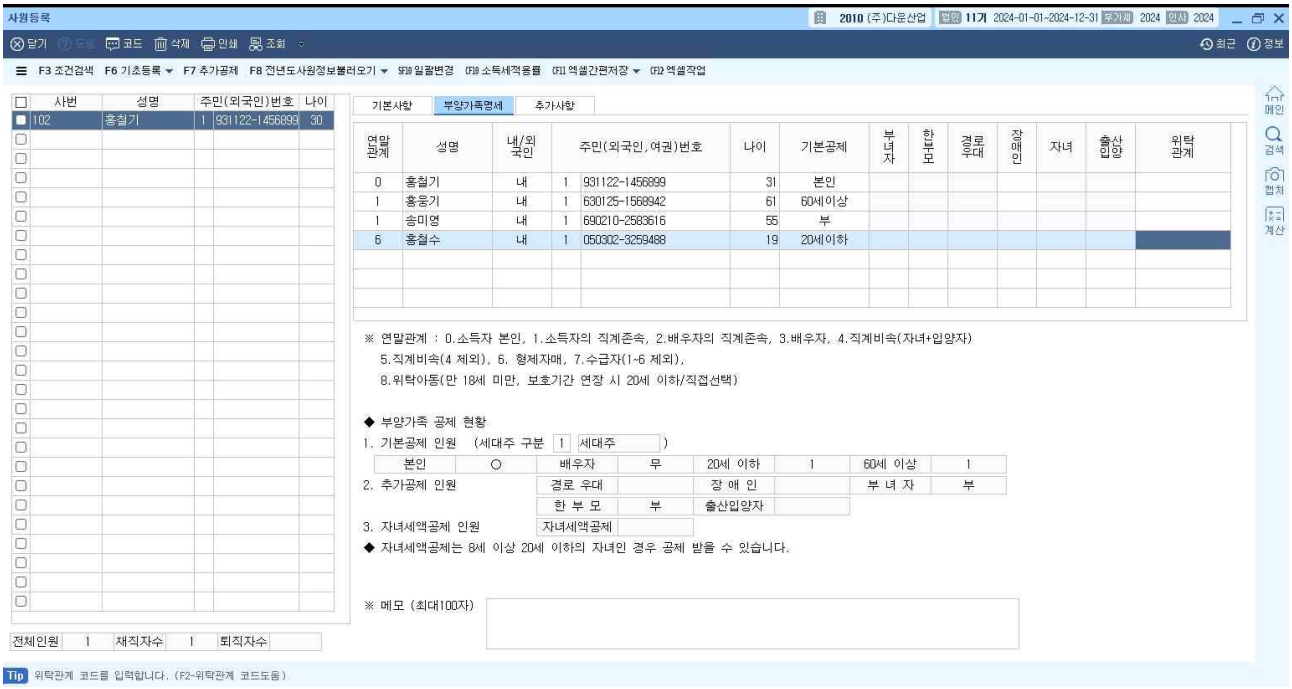

※ 모친은 장애인일지라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소득명세] 탭

소득명세 | 부양가족 | 신용카드 등 | 의료비 | 기부금 | 연금저축 등I | 연금저축 등II | 월세액 | 연말정산입력

구분		합계	주(현)	납세조합	종(전) [1/2]
소득명세	9.근무처명		(주)다운산업		(주)블루밍물산
	9-1.종교관련 종사자		부		부
	10.사업자등록번호		235-86-91265	___-__-_____	605-85-18656
	11.근무기간		2024-06-01 ~ 2024-12-31	____-__-__ ~ ____-__-__	2024-01-01 ~ 2024-05-31
	12.감면기간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13-1.급여(급여자료입력)	43,400,000	25,900,000		17,500,000
	13-2.비과세한도초과액				
	13-3.과세대상추가(인정상여추가)				
	14.상여	1,500,000			1,500,000
	15.인정상여				
	15-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우리사주조합 인출금				
	15-3.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15-4.직무발명보상금				
	16.계	44,900,000	25,900,000		19,000,000

공제보험료명세	직장	건강보험료(직장)(33)	1,190,800	704,000		486,800
		장기요양보험료(33)	143,600	91,200		52,400
		고용보험료(33)	178,400	128,700		49,700
		국민연금보험료(31)	1,309,000	785,000		524,000
	공적연금보험료	공무원 연금(32)				
		군인연금(32)				
		사립학교교직원연금(32)				
		별정우체국연금(32)				
세	기납부세액	소득세	896,700	598,000		298,700
		지방소득세	89,670	59,800		29,870

3.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부양가족] 탭 → 보험료

(1) 본인 홍철기

보험료 등 공제대상금액

자료구분	국세청간소화	급여/기타	정산	공제대상금액
국민연금_직장		1,309,000		1,309,000
국민연금_지역				
합 계		**1,309,000**		**1,309,000**
건강보험료-보수월액		1,190,800		1,190,800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143,600		143,600
건강보험료-소득월액(납부)				
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납부				
합 계		**1,334,400**		**1,334,400**
고용보험료		178,400		**178,400**
보장성보험-일반	713,000			713,000
보장성보험-장애인				
합 계	**713,000**			**713,000**

■ 처음에는 현근무지/종(전), 납세조합에서 지출한 금액(급여/기타)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국세청간소화문서(PDF) 적용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적용을 선택하면 PDF금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

☞ 공제대상금액 적용값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각 [공제대상금액]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구분을 클릭하세요.(실시간 적용 됨)

■ 국세청간소화문서(PDF) 선택시 종(전)근무지에 입력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 직접납부금액은 [정산]란에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불러오기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종전/주현근무지 모두 급여/기타란에 합산표시 됩니다.

(2) 부친 홍웅기

보험료 등 공제대상금액

자료구분	국세청간소화	급여/기타	정산	공제대상금액
국민연금_직장				
국민연금_지역				
합 계				
건강보험료-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건강보험료-소득월액(납부)				
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납부				
합 계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일반	288,000			288,000
보장성보험-장애인				
합 계	288,000			288,000

■ 처음에는 현근무지/종(전), 납세조합에서 지출한 금액(급여/기타)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국세청간소화문서(PDF) 적용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적용을 선택하면 PDF금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
☞ 공제대상금액 적용값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각 [공제대상금액]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구분을 클릭하세요.(실시간 적용 됨)
■ 국세청간소화문서(PDF) 선택시 종(전)근무지에 입력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 직접납부금액은 [정산]란에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불러오기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종전/주현근무지 모두 급여/기타란에 합산표시 됩니다.

※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4.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부양가족] 탭 → 교육비

(1) 본인 홍철기

교육비		
일반		장애인특수
820,000	4.본인	

(2) 동생 홍철수

교육비		
일반		장애인특수
604,000	2.초중고	

4.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의료비] 탭

소득명세 | 부양가족 | 신용카드 등 | 의료비 | 기부금 | 연금저축 등I | 연금저축 등II | 월세액 | 연말정산입력

2024년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공제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14.산후조리원
성명	내/외	5.주민등록번호	6.본인등 해당여부		9.증빙코드	8.상호	7.사업자등록번호	10.건수	11.금액	11-1.실손보험수령액	12.미숙아선천성이상아	13.난임여부	
홍웅기	내	630125-1568942	3	X	1				1,050,000		X	X	X
홍철수	내	050302-3259488	3	X	1				300,000		X	X	X
합계									1,350,000				

일반의료비(본인)		6세이하,65세이상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장애인		일반의료비(그 외)	1,350,000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의료비는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 11번 지출액에서 11-1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세액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2024년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3.12.31.이전 지출한 의료비 해당분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14.산후조리원비용 공제한도는 출산1회당 200만원 입니다.

총급여	44,900,000	의료비 최소금액(총급여의 3%)	1,347,000

5.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신용카드 등] 탭

소득명세 | 부양가족 | 신용카드 등 | 의료비 | 기부금 | 연금저축 등I | 연금저축 등II | 월세액 | 연말정산입력

성명 / 생년월일	자료구분	신용카드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도서등 신용	도서등 직불	도서등 현금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2023년	소비증가분 2024년
홍철기	국세청	12,000,000									12,000,000
1993-11-22	기타										
홍웅기	국세청		1,430,000					370,000			1,800,000
1963-01-25	기타										
송미영	국세청										
1969-02-10	기타										
홍철수	국세청										
2005-03-02	기타										

※ 형제자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6.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월세액] 탭

소득명세 | 부양가족 | 신용카드 등 | 의료비 | 기부금 | 연금저축 등I | 연금저축 등II | 월세액 | 연말정산입력

1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연말정산입력 탭의 70.월세액) 크게보기

임대인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연간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금액
					개시일	~	종료일			
나경자	521121-1357822	아파트	79.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싹아파트 가동	2023-11-01	~	2025-10-31	7,200,000	7,200,000	1,224,000

7.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불러오기

소득명세 | 부양가족 | 신용카드 등 | 의료비 | 기부금 | 연금저축 등I | 연금저축 등II | 월세액 | 연말정산입력

정산(지급)년월 2025 년 2 월 귀속기간 2024 년 6 월 1 일 ~ 2024 년 12 월 31 일 영수일자 2025 년 2 월 28 일

구분				지출액	공제금액
21.총급여					44,900,000
22.근로소득공제					11,985,000
23.근로소득금액					32,915,000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24.본인			1,500,000
		25.배우자			
		26.부양가족	2명)		3,000,000
	추가공제	27.경로우대	명)		
		28.장애인	명)		
		29.부녀자			
		30.한부모가족			
	연금보험료공제	31.국민연금보험료		1,309,000	1,309,000
		32. 공적연금보험공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특별소득공제	33.보험료		1,512,800	1,512,800
		건강보험료		1,334,400	1,334,400
		고용보험료		178,400	178,400
		34.주택차입금	대출기관		

구분				지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49.종합소득 과세표준						23,519,950
50.산출세액						2,267,992
세액감면	51.「소득세법」					
	52.「조세특례제한법」(53제외)					
	53.「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4.조세조약					
	55.세액감면 계					
세액공제	56.근로소득 세액공제					660,000
	57.자녀 세액공제	㉮자녀	명)			
		㉯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58.과학기술공제				
		59.근로자퇴직연금				
		60.연금저축				
		60-1.ISA연금계좌전환				
	특	61.보장성보험	일반	1,001,000	1,001,000	1,000,000	120,000
			장애인			
		62.의료비		1,350,000	1,350,000	3,000	450

제	득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공	3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			
	제	35.기부금-2013년이전이월분			
		36.특별소득공제 계			1,512,800
37.차감소득금액					25,593,200
그	38.개인연금저축				
	39.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015년이전가입		
			2016년이후가입		
밖의 소득공제	40.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		
			근로자주택마련		
	41.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42.신용카드 등 사용액			13,800,000	2,073,250
	43.우리사주조합출연금		일반 등		
			벤처 등		
	44.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45.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6.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7.그 밖의 소득공제 계				2,073,250

세액공제	별	63.교육비		1,424,000	1,424,000	1,424,000	213,600
		64.기부금					
	세액공제	1)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2)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3)특례기부금(전액)					
		4)우리사주조합기부금					
		5)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6)일반기부금(종교단체)					
		65.특별세액공제 계					334,050
	66.표준세액공제						
	67.납세조합공제						
	68.주택차입금						
	69.외국납부						
	70.월세액				7,200,000	7,200,000	1,224,000
	71.세액공제 계						2,218,050
72.결정세액((50)-(55)-(71))							49,942
82.실효세율(%) [(72/21)]X100							0.1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73.결정세액		49,942	4,994		54,936
기납부세액	74.종(전)근무지	298,700	29,870		328,570
	75.주(현)근무지	598,000	59,800		657,800
76.납부특례세액					
77.차감징수세액		-846,750	-84,670		-931,420

[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①소득자별로 각 소득에 따라 [소득자료입력] 메뉴를 작성하고, 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를 작성 및 마감하여 ③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단, 당사는 반기별 신고 특례 대상자가 아니며 정기분 신고에 해당함) (4점)

1. 소득지급내역

소득자				지급총액(세전)	소득구분	소득 귀속(지급)일
구분	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101	이영희	890102 - 2415481	3,000,000원	이자소득	2024.07.31.
개인	201	지임선	960605 - 1254895	5,000,000원	기타소득	2024.07.31.

2. 위의 소득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위의 이자소득은 당사가 이영희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한다.
4. 위의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고용관계 없음)로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는 없으며,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최대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5. 위에 주어진 정보 외의 자료 입력은 생략한다.

<전자신고 관련 유의사항>

1.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변환(교육용)] 순으로 진행한다.
2. [전자신고]에서 전자파일 제작 시 신고인 구분은 2.납세자 자진신고로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20241234"로 입력한다.
3.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변환(교육용)]에서 전자파일변환(변환대상파일선택) > 찾아보기
4.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저장경로는 로컬디스크(C:)이며, 파일명은 "작성연월일.01.t사업자등록번호"이다.
5. 형식검증하기 ➡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내용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을 순서대로 클릭한다.
6. 최종적으로 전자파일 제출하기 를 완료한다.

[답]

1.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메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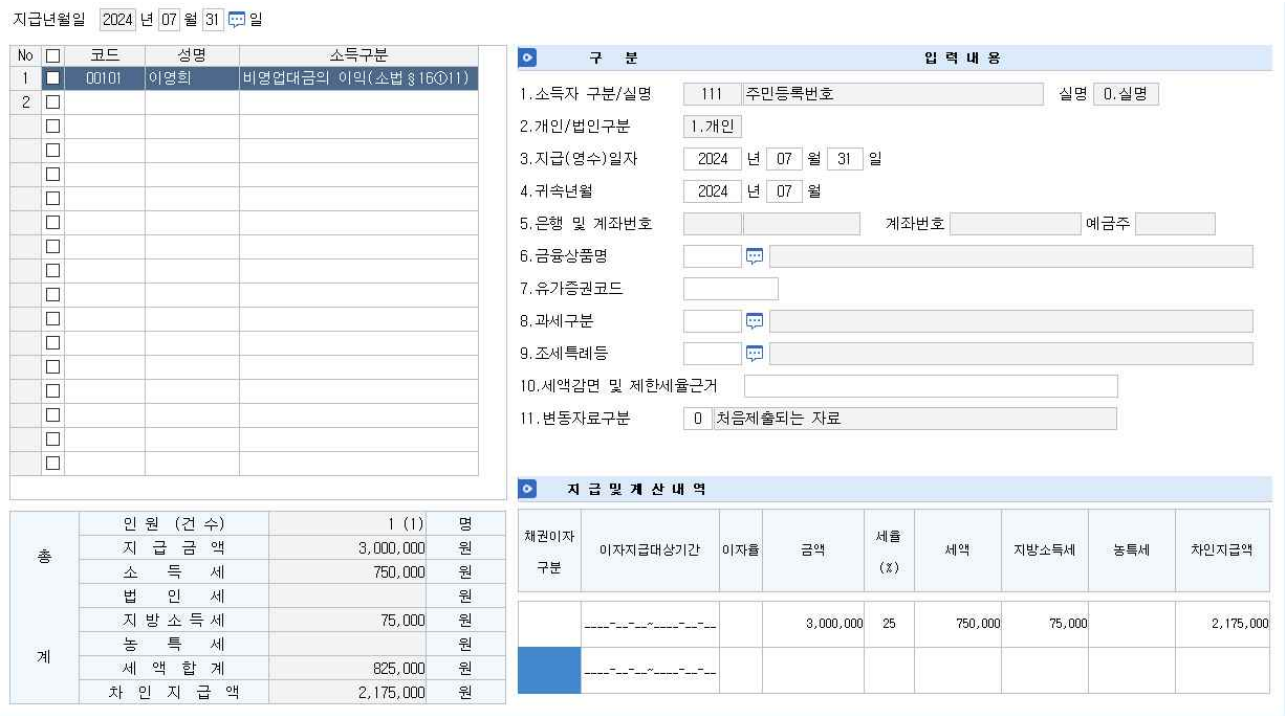

지급년월일 2024 년 07 월 31 일

No	코드	성명	소득구분
1	00101	이영희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 §16①11)
2			

구 분	입 력 내 용
1.소득자 구분/실명	111 주민등록번호 실명 0.실명
2.개인/법인구분	1.개인
3.지급(영수)일자	2024 년 07 월 31 일
4.귀속년월	2024 년 07 월
5.은행 및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6.금융상품명	
7.유가증권코드	
8.과세구분	
9.조세특례등	
10.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	
11.변동자료구분	0 처음제출되는 자료

총계	인 원 (건 수)	1 (1)	명
	지 급 금 액	3,000,000	원
	소 득 세	750,000	원
	법 인 세		원
	지 방 소 득 세	75,000	원
	농 특 세		원
	세 액 합 계	825,000	원
	차 인 지 급 액	2,175,000	원

지 급 및 계 산 내 역

채권이자 구분	이자지급대상기간	이자율	금액	세율 (%)	세액	지방소득세	농특세	차인지급액
	----.--.--~----.--.--		3,000,000	25	750,000	75,000		2,175,000
	----.--.--~----.--.--							

2. [기타소득자자료입력] 메뉴 작성

기타소득자자료입력

지급년월일 2024 년 07 월 31 일

코드	상호(성명)
00201	지일선

소 득 자 내 역

1.거 주 구 분 1 거 주
2.소 득 구 분 76 강연료 등 연 말 정 산 적 용
3.내 국 인 여부 1 내국인 (거주지국코드 등록번호)
4.주민 등록 번호 960605-1254895
5.개인/ 법인구분 1 개 인 필요경비율 60 %

지급 및 계산내역

1.지 급(영 수) 일 자 2024 년 07 월 31 일
2.귀 속 년 월 2024 년 07 월
3.지 급 총 액 5,000,000
4.필 요 경 비 3,000,000
5.소 득 금 액 2,000,000
6.세 율(%) 20 % 7.세액감면및제한세율근거
8.기타소득(법인)세액 400,000
9.지 방 소 득 세 40,000
10.농 어 촌 특 별 세
11.종교활동비(비과세) ※ [3.지급총액]금액에 불포함(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총계	인원(건수)	1(1)	명
	지급 총액	5,000,000	원
	소득 금액	2,000,000	원
	세 액	400,000	원
	지방소득세	40,000	원
	농 특 세		원

Tip 77.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인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므로 초과된 필요경비만 입력합니다.(소득령 제202조 제4항)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 작성 및 마감

귀속기간 2024 년 07 월 ~ 2024 년 07 월 지급기간 2024 년 07 월 ~ 2024 년 07 월 신고구분 1.정기신고 차수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귀속년월	2024년 7월	지급년월	2024년 7월
일괄납부여부	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부	부표 작성		환급신청서 작성		승계명세 작성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인원	소득지급 총지급액	징수세액 소득세 등	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가산세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세 등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
거주자	근로소득	가 감 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 감 계	A30								
비거주자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매월	A43								
		종교인연말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1	5,000,000	400,000					
		그 외	A42								
		가 감 계	A40	1	5,000,000	400,000				400,000	
	이 자 소 득		A50	1	3,000,000	750,000				750,000	
	배 당 소 득		A60								
	그 외 소 득		▶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2	8,000,000	1,150,000				1,150,000	

4. [전자신고]

F4 제작 F6 홈택스바로가기

세무대리인등록 | 원천징수이행상황제작

신고인구분 2 1.세무대리인신고 2.납세자자진신고 지급기간 2024 년 07 월 ~ 2024 년 07 월

회사구분 0.전체회사코드 담 당 자 회 사 2010 (주)다운산업 ~ 2010 (주)다운산업

신 고 0.전체 원천신고 0.전체 제작경로 C:₩

☑	코드	회사명	원천신고구분	귀속년월	지급년월	소득세납부세액(A99)	신고구분
☑	2010	(주)다운산업	매월	2024-07	2024-07	1,150,000	정기신고

Info

[C:₩20240923.01.t2358691265]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확인

5.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변환] 작성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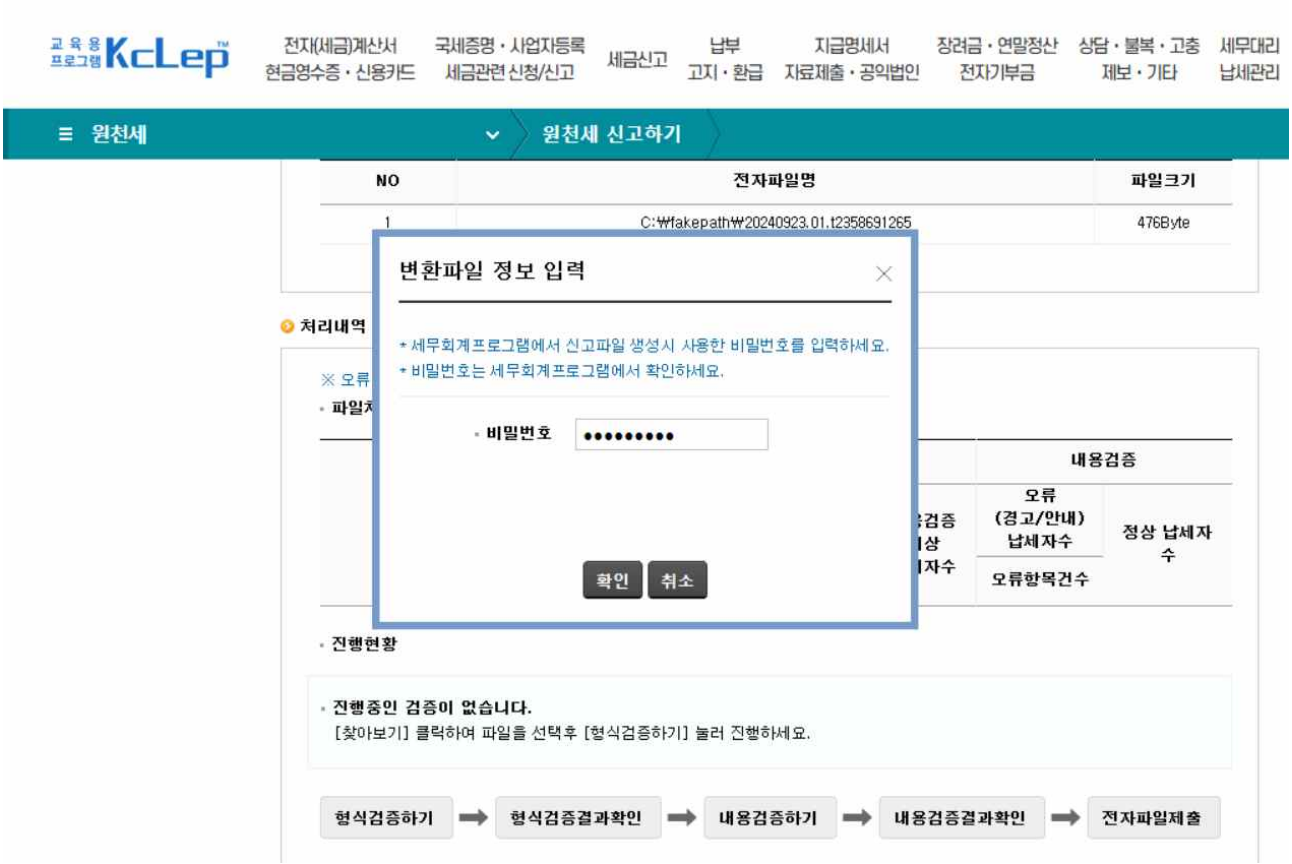

문제5 **㈜아영전자(회사코드:2011)는 금속제품 등의 제조·도매업과 도급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당해 사업연도(제13기)는 2024.1.1.~2024.12.31.이다. [법인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기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25점) ※ 회사 선택 시 유의하시오.**

[작성대상서식]

1.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
2.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3.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4.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6.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 다음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반영하시오. (단,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전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있음) (4점)

1. 퇴직급여추계액 : 기말 현재 임직원 전원 퇴사 시 퇴직급여추계액 280,000,000원
2. 퇴직연금운용자산 내역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	110,000,000원	당기감소액	45,500,000원
불입	60,000,000원	기말	124,500,000원
	170,000,000원		170,000,000원

3. 당기 중 퇴직연금운용자산 감소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직급여(제) 45,5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45,500,000원
4. 전기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퇴직연금충당부채 110,000,000원(△유보)이 있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잔액은 280,000,000원이고, 기말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서세(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금액은 280,000,000원(유보)이다.

[답]

1.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운용자산	45,500,000원	(유 보 감 소)
<손 금 산 입>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0원	(유 보 발 생)

[2] 다음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반영하시오. (4점)

1. 재무상태표상의 차입금 현황 및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입기관	차입금	차입기간	연이자율	지급이자	비고
진산은행㈜	100,000,000원	2022.01.01. ~ 2025.06.30.	4%	4,000,000원	특수관계 없음
미소캐피탈㈜	70,000,000원	2024.01.01. ~ 2025.12.31.	5%	3,500,000원	특수관계 없음
한성㈜	30,000,000원	2024.01.01. ~ 2025.12.31.	3.5%	1,050,000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

2. 대표이사(김아영)에 대한 가지급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금액	적요
2023.11.01.	10,000,000원	전기이월액
2024.07.01.	50,000,000원	대표이사 주택구입자금 대여금
2024.10.01.	3,000,000원	대표이사 이사비용 대여금

3.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500,000원을 계상하였다.
4. 회사는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답]

1.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메뉴 → [1.가지급금.가수금 입력]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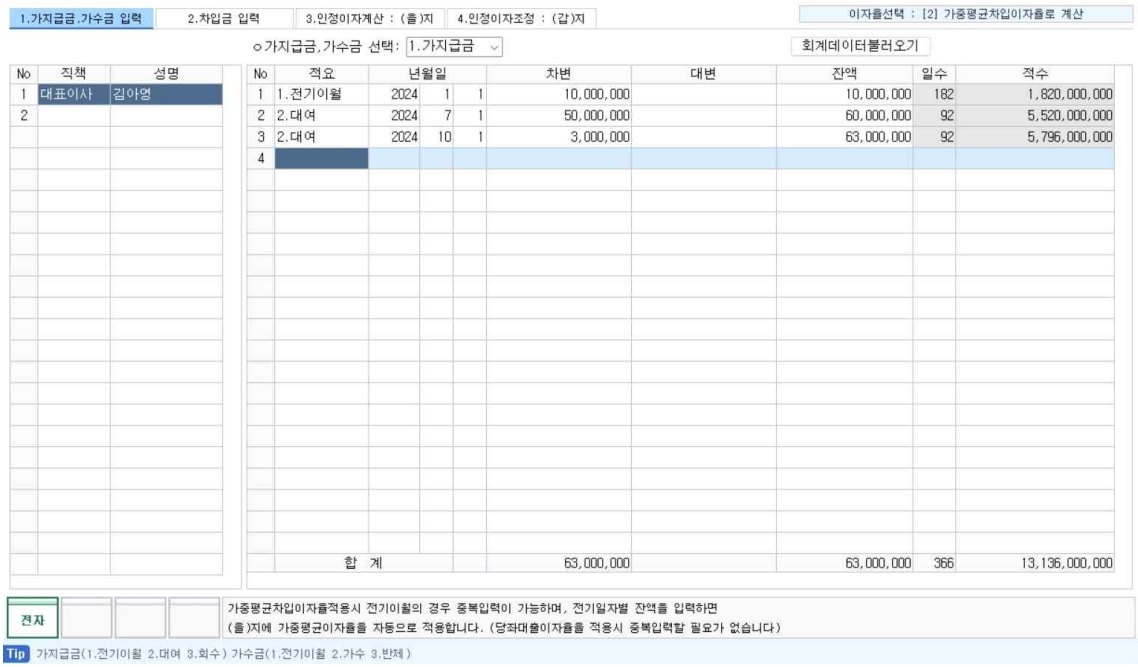

2.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메뉴 → [2.차입금 입력]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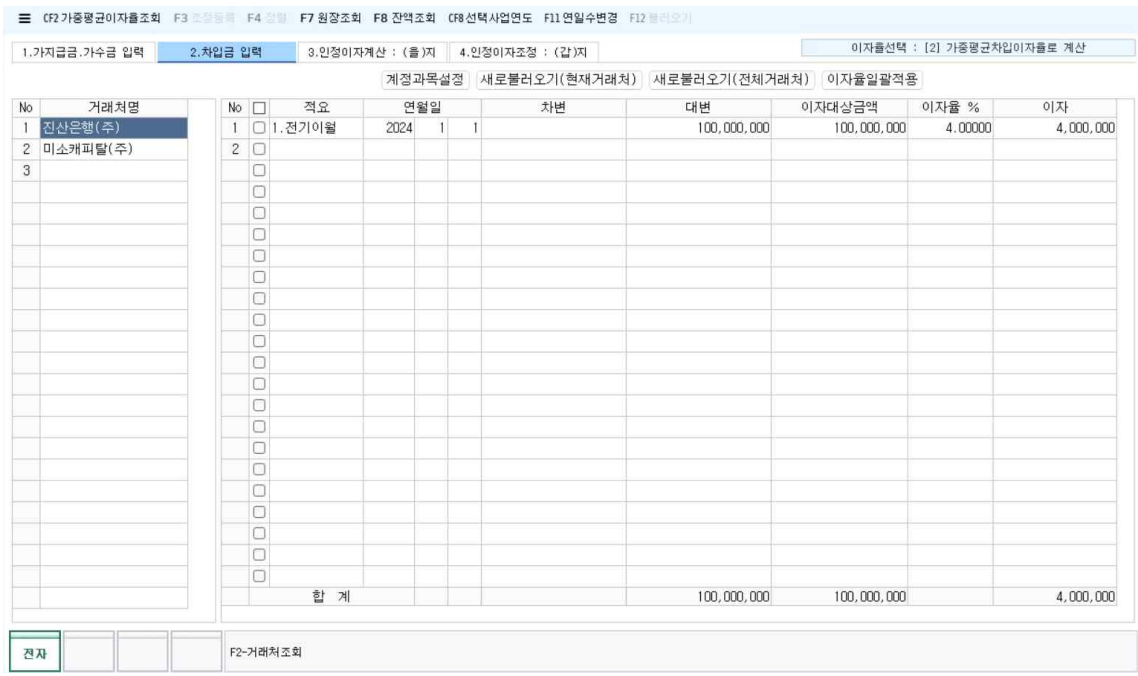

3.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메뉴 → [3.인정이자계산 : (을)지]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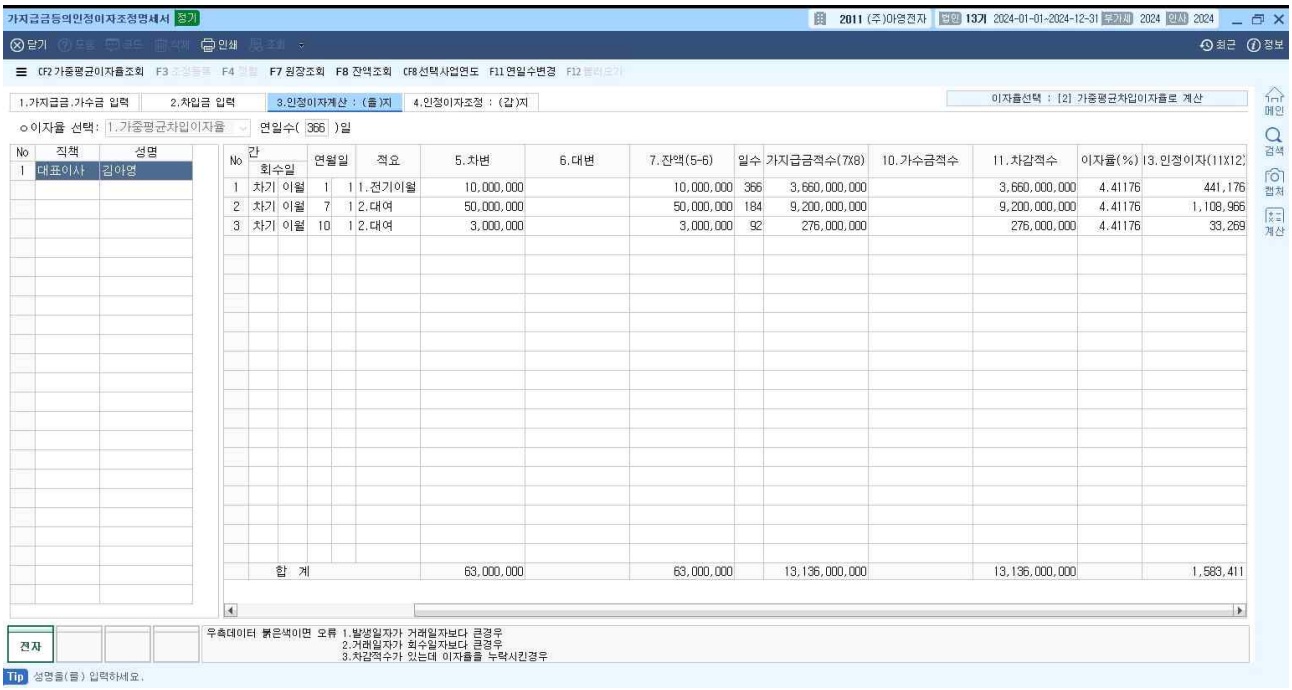

4.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메뉴 → [4.인정이자조정 : (갑)지]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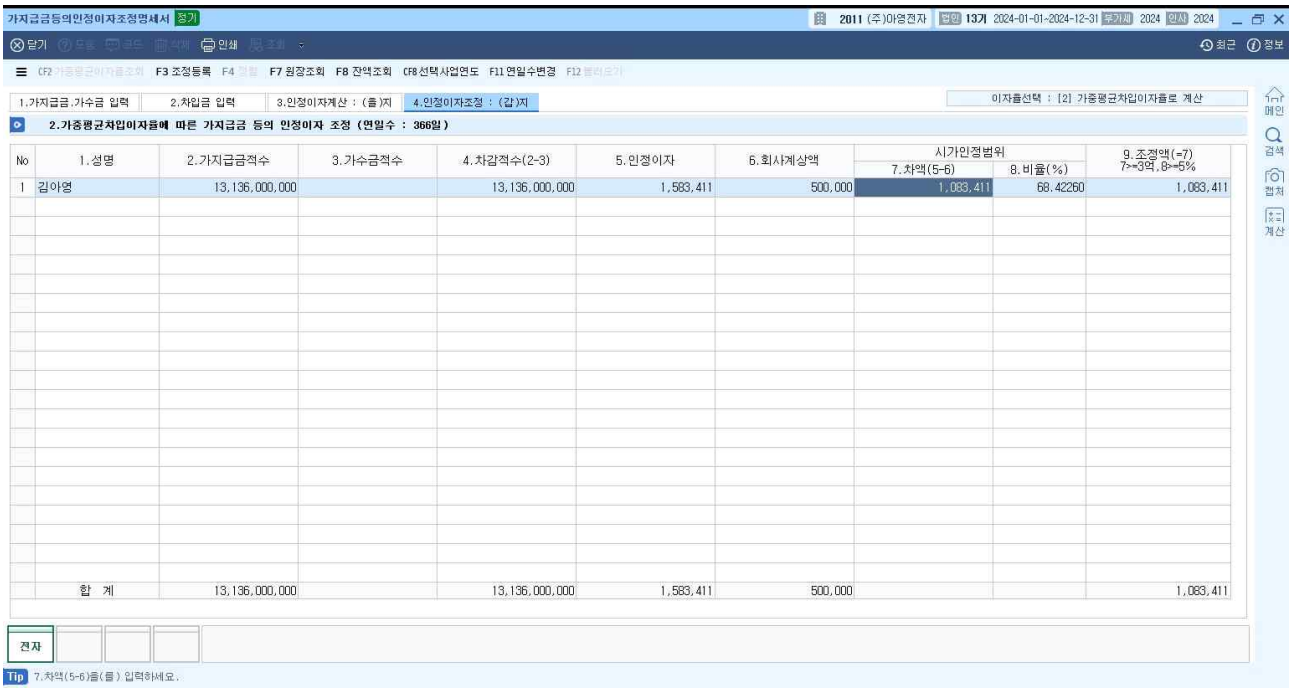

5. 세무조정

<익 금 산 입> 가지급금인정이자 1,083,411원 (상 여)

[3] 다음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반영하시오. (단, 당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4점)

계정과목	발생일자	외화금액 (USD)	발생일 적용환율	2023년 말 매매기준율	2024년 말 매매기준율
외상매출금 (NewYorK)	2024.05.15.	$100,000	$1 = 1,250원		$1 = 1,200원
미국소재의 토지	2023.12.01.	$30,000	$1 = 1,400원	$1 = 1,300원	$1 = 1,200원
외상매입금 (Auction)	2023.11.25.	$130,000	$1 = 1,300원	$1 = 1,300원	$1 = 1,200원
선수금(㈜동광)	2024.06.30.	$80,000	$1 = 1,250원		$1 = 1,200원

・2023년과 2024년 결산 회계처리 시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말)일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화폐성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세무조정은 각 자산 및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답]

1.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메뉴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을지)] 탭

외화자산,부채의평가(을지) | 통화선도,스왑,환변동보험의평가(을지) | 환율조정차,대등(갑지)

No	②외화종류(자산)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⑤적용환율	④장부가액 ⑥원화금액	⑦평가금액 ⑧적용환율	⑦평가금액 ⑨원화금액	⑩평가손익 자 산(⑨-⑥)
1	USD	100,000.00	1,250.0000	125,000,000	1,200.0000	120,000,000	-5,000,000
2							
	합 계			125,000,000		120,000,000	-5,000,000

No	②외화종류(부채)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⑤적용환율	④장부가액 ⑥원화금액	⑦평가금액 ⑧적용환율	⑦평가금액 ⑨원화금액	⑩평가손익 부 채(⑥-⑨)
1	USD	130,000.00	1,300.0000	169,000,000	1,200.0000	156,000,000	13,000,000
2							
	합 계			169,000,000		156,000,000	13,000,000

2. 세무조정

<손금산입>외상매출금(외화환산손실) 5,000,000원 (유보발생)
<익금산입>외상매입금(외화환산이익) 13,000,000원 (유보발생)
※ 토지와 선수금은 비화폐성자산부채에 해당된다.

[4] 다음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반영하시오. (단,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로 가정함) (4점)

1. 당기 대손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고, 모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하였다.

일자	내역	비고
2024.05.29.	㈜세무의 외상매출금 40,000,000원	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2024.10.21.	㈜회계의 외상매출금 3,000,000원	회수기일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
2024.02.01.	㈜경리의 부도어음 19,999,000원 대손 확정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부도어음 20,000,000원

2. 대손충당금 계정 내역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43,000,000원	전기이월	102,000,000원
받을어음	19,999,000원		
차기이월액	39,001,000원		
계	102,000,000원	계	102,000,000원

3. 당기말 채권 잔액으로, 당기말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1,425,000,000원이고 당기말 받을어음의 잔액은 100,500,000원이다.
4.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7,500,000원이다.

[답]

1.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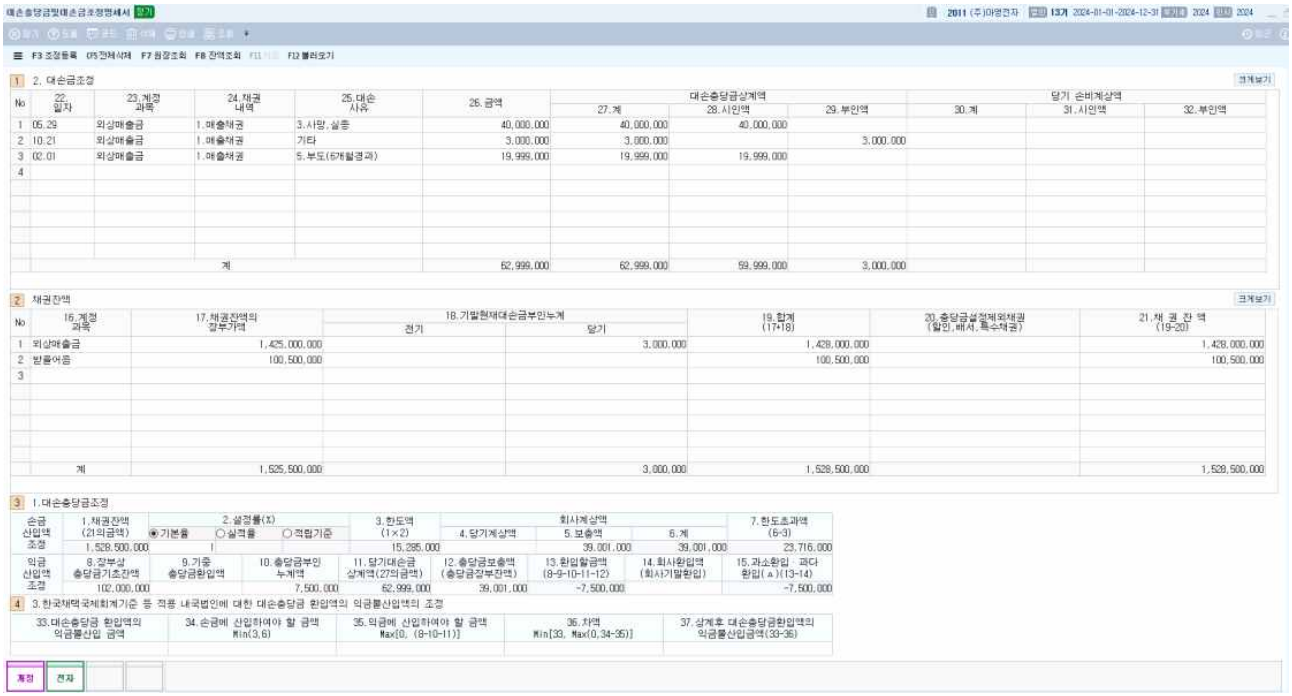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닫기

2011 (주)아영전자 | 13기 2024-01-01~2024-12-31 | 2024 | 2024 | 2024

F3 조정등록 F5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2. 대손금조정 (크게보기)

No	22. 일자	23. 계정과목	24. 채권내역	25. 대손사유	26.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27. 계	28. 시인액	29. 부인액	당기 손비계상액 30. 계	31. 시인액	32. 부인액
1	05.29	외상매출금	1.매출채권	3.사망,실종	40,000,000	40,000,000	40,000,000				
2	10.21	외상매출금	1.매출채권	기타	3,000,000	3,000,000		3,000,000			
3	02.01	외상매출금	1.매출채권	5.부도(6개월경과)	19,999,000	19,999,000	19,999,000				
4											
			계		62,999,000	62,999,000	59,999,000	3,000,000			

2 채권잔액 (크게보기)

No	16. 계정과목	17.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18.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 전기	당기	19. 합계 (17+18)	20. 충당금설정제외채권 (할인,배서,특수채권)	21. 채 권 잔 액 (19-20)
1	외상매출금	1,425,000,000		3,000,000	1,428,000,000		1,428,000,000
2	받을어음	100,500,000			100,500,000		100,500,000
3							
	계	1,525,500,000		3,000,000	1,528,500,000		1,528,500,000

3 1. 대손충당금조정

손금산입액 조정	1. 채권잔액 (21의금액)	2. 설정률(%) ◉기본률 ○실적률 ○적립기준	3. 한도액 (1×2)	회사계상액 4. 당기계상액	5. 보충액	6. 계	7. 한도초과액 (6-3)
	1,528,500,000	1	15,285,000		39,001,000	39,001,000	23,716,000

익금산입액 조정	8. 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	9. 기중 충당금환입액	10. 충당금부인 누계액	11. 당기대손금 상계액(27의금액)	12. 충당금보충액 (충당금장부잔액)	13. 환입할금액 (8-9-10-11-12)	14. 회사환입액 (회사기말환입)	15. 과소환입 · 과다 환입(△)(13-14)
	102,000,000		7,500,000	62,999,000	39,001,000	-7,500,000		-7,500,000

4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33.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34.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Min(3,6)	35.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Max[0, (8-10-11)]	36. 차액 Min[33, Max(0,34-35)]	37. 상계후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불산입금액(33-36)

계정 전자

2. 세무조정

< 손 금 산 입 >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7,500,000원 (유보감소)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액 3,00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3,716,000원 (유보발생)

[5] 다음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반영하시오. (4점)

<자료>		
계정과목	금액	내용
감가상각비 (비품)	3,000,000원	・전기 감가상각부인액 : 2,000,000원 ・수선비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액 : 5,000,000원 ・세법상 당기 감가상각범위액 : 4,500,000원
세금과공과금	8,000,000원	・토지(공장용지) 구입 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부액 4,000,000원이 포함됨.
잡이익	3,300,000원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법인세를 환급받음.
잡손실	8,200,000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판결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 8,000,000원이 포함됨.
법인세비용	52,480,000원	・당기 법인세와 당기 법인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임.

[답]

<손금산입>	전기 감가상각비(비품) 한도초과액	1,500,000원	(유 보 감 소)(주1)
<손금불산입>	토지(공장용지)	4,000,000원	(유 보 발 생)
<익금불산입>	잡이익	3,300,000원	(기 타)
<손금불산입>	잡손실	8,0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52,480,000원	(기타사외유출)

(주1)수선비로 처리한 500만원은 소액 수선비에 해당(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되어 당기 비용처리 된다.

[6] 다음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단,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기로 함) (5점)

1. 표준손익계산서 일부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381,500,000원
Ⅸ.법인세비용	218	52,480,000원
Ⅹ.당기순손익	219	329,020,000원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 금액 : 91,340,000원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 금액 : 4,070,000원

※ 위 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음.

3. 세무상 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

발생연도	2012년	2015년	2020년
금액	80,000,000원	40,000,000원	8,000,000원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모두 당기 발생분에 해당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19,000,000원

・통합투자세액공제 : 25,270,000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5,660,000원

5. 가산세 관련 사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15,800,000원으로 전액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 하였다.

・2024년분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2025.03.30.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024년 발생 및 지급한 퇴직금은 12,450,000원이다.

6. 기타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6,340,000원을 납부하였다.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답]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정기 | 2011 (주)아영전자 | 법인 13기 2024-01-01~2024-12-31 | 추가제 2024 | 인사 2024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최근 정보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저장 F12불러오기

①각사업연도소득계산	101.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329,020,000
	소득조정금액	102.익금산입	02	91,340,000
		103.손금산입	03	4,070,000
	104. 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416,290,000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05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107. 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416,290,000
②과세표준계산	108.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416,290,000
	109. 이월결손금		07	48,000,000
	110. 비과세소득		08	
	111. 소득공제		09	
	112. 과세표준 (108-109-110-111)		10	368,290,000
	159. 선박표준이익		55	
③산출세액계산	113. 과세표준 (113=112+159)		56	368,290,000
	114. 세율		11	19%
	115. 산출세액		12	49,975,100
	116. 지점유보소득(법제96조)		13	
	117. 세율		14	
	118. 산출세액		15	49,975,100
	119. 합계 (115+118)		16	49,975,100

④납부할세액계산	120. 산출세액 (120=119)			49,975,100
	121.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7	
	122. 차감세액		18	49,975,100
	123.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9	
	124. 가산세액		20	
	125. 가감계 (122-123+124)		21	49,975,100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126. 중간예납세액	22	
		127. 수시부과세액	23	
		128. 원천납부세액	24	
		129. 간접회사등 외국납부세액	25	
		130. 소계(126+127+128+129)	26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 합계 (130+131)		28	
	133.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134. 차가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49,975,100
⑤토지등양도소득, ⑥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⑦세액계	151. 차감납부할 세액계 (134+150+166)		46	49,975,100
	152. 사실과다른회계처리경정세액공제		57	
	153. 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49,975,100
	154. 분납할세액		48	
	155. 차감납부세액 (151-152-154)		49	49,975,100

전자 | 전자(중간예납) | Tip

※ 2012년 발생 이월결손금 80,000,000원은 10년(2009.1.1.이후 2019.12.31.이전 발생분) 경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정기 | 회 2011 (주)아영전자 | 법인 13기 2024-01-01~2024-12-31 | 부가세 2024 | 인사 2024

닫기 | 도움 | 삭제 | 인쇄 | 조회 | 최근 | 정보

F3 조정등록 F4 조정감순서 CF5 전체삭제 F6 중소기업유예연차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CF12 접대비1원단수조정

①구분		코드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01	329,020,000			
소득조정금액	(102)익 금 산 입	02	91,340,000			
	(103)손 금 산 입	03	4,070,000			
(104) 조 정 후 소 득 금 액 (101+102-103)		04	416,290,000	416,290,000		416,290,000
최저한세적용대상 특 별 비 용	(105)준 비 금	05				
	(106)특별상각,특례상각	06				
(107) 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104+105+106)		07	416,290,000	416,290,000		416,290,000
(108)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1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 금 산 입		09				
(110) 각 사업 년 도 소 득 금 액 (107+108-109)		10	416,290,000	416,290,000		416,290,000
(111) 이 월 결 손 금		11	48,000,000	48,000,000		48,000,000
(112) 비 과 세 소 득		12				
(113) 최저한세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3				
(114)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		14				
(115) 차가감 소 득 금 액(110-111-112+113+114)		15	368,290,000	368,290,000		368,290,000
(116) 소 득 공 제		16				
(117) 최저한세적용대상 소 득 공 제		17				
(118) 과 세 표 준 금 액(115-116+117)		18	368,290,000	368,290,000		368,290,000
(119) 선 박 표 준 이 익		24				
(120) 과 세 표 준 금 액 (118+119)		25	368,290,000	368,290,000		368,290,000
(121) 세 율		19	19 %	7 %		19 %
(122) 산 출 세 액		20	49,975,100	25,780,300		49,975,100
(123) 감 면 세 액		21				
(124) 세 액 공 제		22	25,270,000		1,075,200	24,194,800
(125) 차 감 세 액 (122-123-124)		23	24,705,100			25,780,300

전자 | 전자(중간예납)

Tip ③최저한세율(률) 입력하세요.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금액이 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이며 세액감면이나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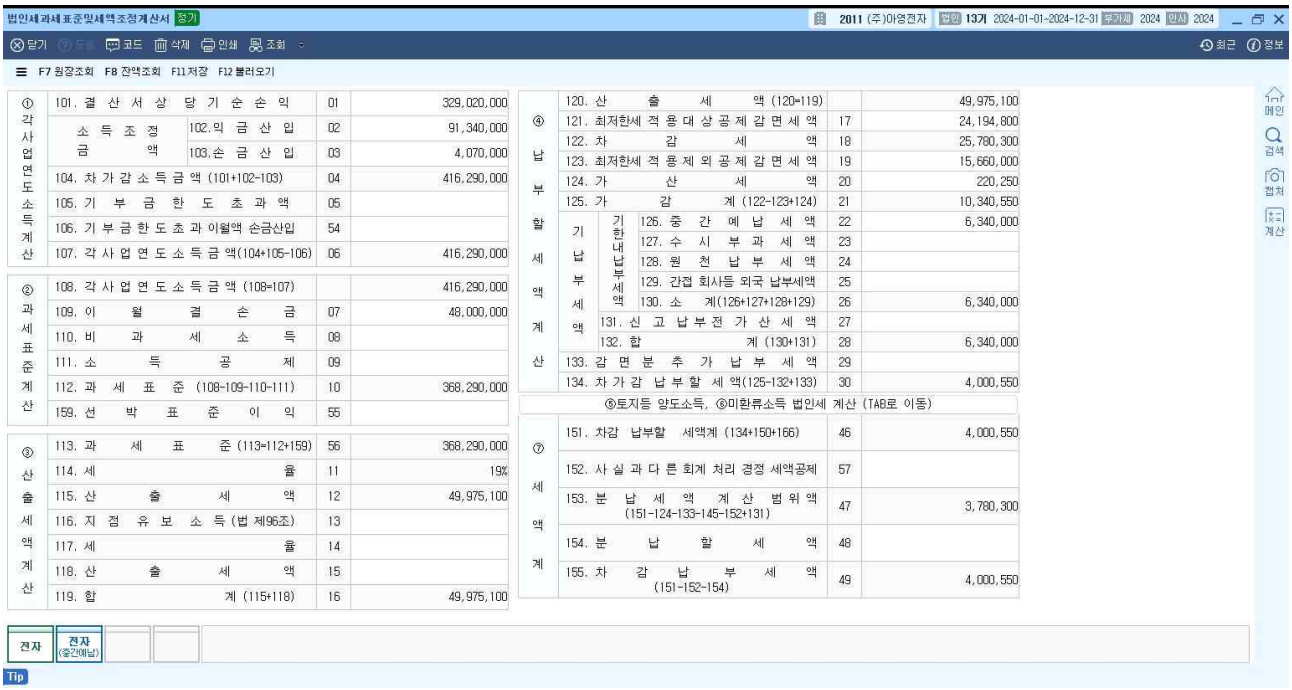

① 각사업연도소득계산	101.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329,020,000
	소득조정금액 102.익금산입	02	91,340,000
	소득조정금액 103.손금산입	03	4,070,000
	104. 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416,290,000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05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107. 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416,290,000
② 과세표준계산	108.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416,290,000
	109. 이월결손금	07	48,000,000
	110. 비과세소득	08	
	111. 소득공제	09	
	112. 과세표준 (108-109-110-111)	10	368,290,000
	159.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계산	113. 과세표준 (113=112+159)	56	368,290,000
	114. 세율	11	19%
	115. 산출세액	12	49,975,100
	116. 지점유보소득(법제96조)	13	
	117. 세율	14	
	118. 산출세액	15	
	119. 합계 (115+118)	16	49,975,100

④ 납부할세액계산	120. 산출세액 (120=119)		49,975,100
	121.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7	24,194,800
	122. 차감세액	18	25,780,300
	123.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9	15,660,000
	124. 가산세액	20	220,250
	125. 가감계 (122-123+124)	21	10,340,550
	기납부세액 / 기한내납부세액 126. 중간예납세액	22	6,340,000
	127. 수시부과세액	23	
	128. 원천납부세액	24	
	129. 간접회사등 외국납부세액	25	
	130. 소계(126+127+128+129)	26	6,340,000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 합계 (130+131)	28	6,340,000
	133.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134. 차가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4,000,550
⑥토지등 양도소득, ⑥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⑦ 세액계	151. 차감 납부할 세액계 (134+150+166)	46	4,000,550
	152. 사실과다른회계처리 경정 세액공제	57	
	153. 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3,780,300
	154. 분납할세액	48	
	155. 차감납부세액 (151-152-154)	49	4,000,55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15,800,000원×1% = 158,000원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12,450,000원×0.5% = 62,250원(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 (USB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